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5
----------	------

발의연월일 : 2020. 7. 1.

발 의 자 : 박덕흠 · 김도읍 · 엄태영  
추경호 · 이종배 · 권성동  
김용관 · 김예지 · 김석기  
류성걸 · 황보승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은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주변 지역에 분진, 소음, 악취를 발생시키거나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교통편의 및 입지선정의 경제성 등으로 인하여 특정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편중되어 설치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폐기물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 배출자가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나, 폐기물이 방치되는 등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아 환경오염이 발생하였음에도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역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조정하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방치된 폐기물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

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직접 조치를 취하되, 사후에 폐기물 배출자를 찾아 관련 비용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며, 법령을 위반한 배출자 등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58조의3 신설 및 제68조제2항·제3항).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국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55조제1항 전단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5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국가의 환경복원 조치) ① 제3조의2제4항,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된 폐기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상·환경상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폐기물 처리 및 오염된 환경의 복원 등 책

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국가는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오염된 환경의 복원에 드는 비용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6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할 때에 폐기물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③ (생략)

<신 설>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① -----  
-----제5항-----  
-----  
-----  
-----  
-----  
-----  
-----  
-----  
-----  
-----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8조의3(국가의 환경복원 조치)

① 제3조의2제4항,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된 폐기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상·환경상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폐기물 처리 및 오염된 환경의 복원 등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국가는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오염된 환경의 복원에 드는 비용을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자가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8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의4.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6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500만원-----  
-----.

1. ~ 12의4. (현행과 같음)

③ -----

<p>해당하는 자에게는 <u>10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14. (생략)</p> <p>④ (생략)</p>	<p>-----<u>300만원</u>-----</p> <p>-----.</p> <p>1. ~ 14.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	--